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08호 2014. 8.26 (화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4-6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2
- 하동군 고시 제2014-6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71차) 5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4-549호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7
- 하동군 공고 제2014-55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
- 하동군 공고 제2014-559호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8
- 하동군 공고 제2014-560호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5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408 호

고시 제2014-6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3일

하 동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결정	군도	노량~고이	진교면 술상리	L=0.44km	진교면 술상리 산81-2	양포-술상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2.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3. 사업시행기간 : 2014년 5월 26일 ~ 2015년 5월 25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14년 8월 13일 ~ 2014년 9월 1일

나. 장소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5. 토지조서 : 붙임

※ 용지도면은 하동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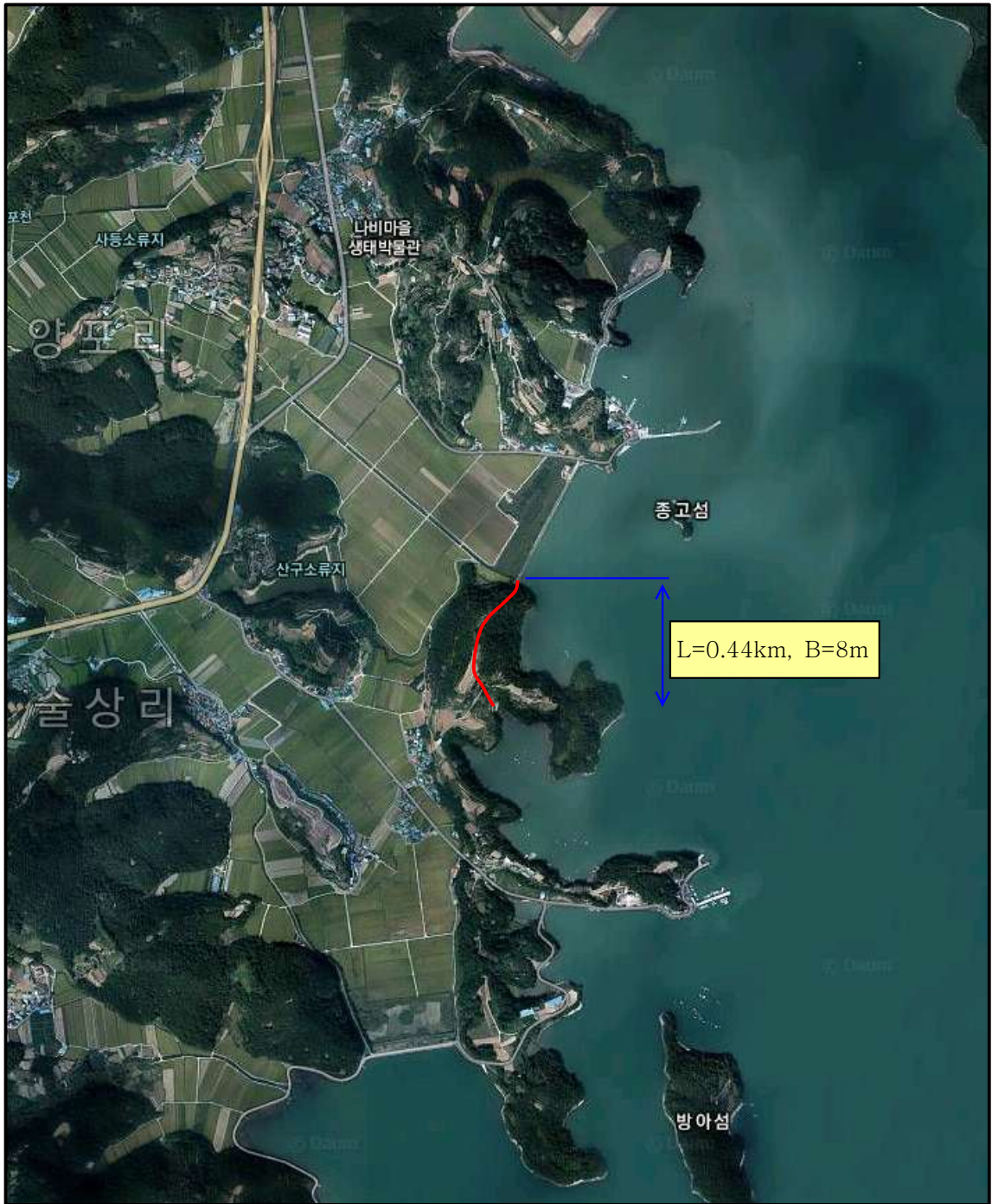
하 동 군 공 보

(3) 제 408 호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계							10,198			
1	진교	술상	산81-1	산81-4	임야	5,851	992	이상봉 김태석 이무순	하동군 금남면 술상리 172 하동군 금남면 술상리 207 서울 성북구 장원로38나길 13-9(장위동)	지분1/3 지분1/3 지분1/3
2	진교	술상	산82	산82-1	임야	198	54	김기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3, 111동 806호(기장현대아파트)	
3	진교	술상	산81-2	산81-6	임야	18,843	5,667	이상봉 이무순	하동군 금남면 술상리 172 서울 성북구 장원로38나길 13-9(장위동)	지분1/3 지분2/3
4	진교	술상	산83-1	산83-8	임야	5,839	741	성기대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87-72	
				산83-10	임야		105	성기대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87-72	
5	진교	술상	41-3	41-5	전	602	375	성기대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87-72	
6	진교	술상	41	41-4	전	942	92	윤희관	하동군 진교면 술상동천길 108	
7	진교	술상	산88-1	산88-3	임야	7,537	12	김해김씨 의현공파 입 하동광성 공후손금 남종중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161 대표자:김장수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530	
8	진교	술상	산89-1	산89-8	임야	4,401	898	이경선	창원시 진해구 총장로 575, 101동 811호(풍호동, 우성아파트)	근저당 지상권
9	진교	술상	35-1	35-2	전	711	291	이경선	창원시 진해구 총장로 575, 101동 811호(풍호동, 우성아파트)	근저당 지상권
10	진교	술상	35	35	답	793	793	김남상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87-30	
11	진교	술상	820		제방	6,344	178	국	건설교통부	

위 치 도



하동군 고시 제2014-6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71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8. 21.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길 75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6) 제 408 호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안삼리 24-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길 75	20070618	백련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199-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42	20070618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26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352-14	20070702	하동군 옥종면과 산청군 단성면의 첫글자를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413-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114	20070702	하동군 옥종면과 산청군 단성면의 첫글자를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243-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7-21	20080402	넓고 비옥한 평야를 상징한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지역특성을 함성하여 북방우회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22-11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나팔목길 17-17	20080402	모섬과 마을 사이를 흐르는 강물 소리가 나팔부는 소리처럼 들려 붙여진 마을이름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나팔목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22-12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나팔목길 17-19	20080402	모섬과 마을 사이를 흐르는 강물 소리가 나팔부는 소리처럼 들려 붙여진 마을이름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나팔목길로 명명	

하동군 공고 2014-549호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14년도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일
하 동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렬	채용분야	채용인원
기간제근로자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원	2명

2. 주요업무내용

-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
- 그밖의 부여받은 업무

3. 근무기간 : 2014. 9. 1. ~ 2013. 10. 15. (45일간)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41,680원/일(간식비 제외)
- 근로시간
 - 주5일(월~금) : 09:00~18:00(8시간)
 - 휴게시간 : 12:00~13:00
- 근로조건 충족시 주휴, 휴일근무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부담분 공제

5.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하동군 관내 주소를 두고(실 거주자)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Excel 및 한글 사용자)
-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현장 조사 등에 지장이 없는 신체 조건 및 운전면허 소지자 우선

6. 공고 및 서류접수

- 공고기간 : 2014. 8. 11. ~ 8. 27.
- 접수 및 면접기간 : 2014. 8. 21. ~ 8. 27 (09:00 ~ 18:00)
- 접 수 처 : 경남 하동군청 경제수산과 (해양개발담당 ☎ 880-244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 서류접수시 면접을 병행하므로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요망

7.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소개서 1부.

9.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후 2014. 8. 29(금) 개별통보

10.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 경제수산과 해양개발담당(☎ 055-880-244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 동 군 공 보

(8) 제 408 호

하동군 공고 제2014 - 55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제안이유

- 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라 연가일수 재직기간 인정범위를 조정하고
- 나. 장기재직자, 임신중인 공무원 및 초등학교 상당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연가일수의 재직기간 인정범위 조정(안 제18조 2항)
- 나.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기간 조정(안 제23조제2항)
- 다. 임신 중인 공무원 및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 휴가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7항,제8항,제9항)
- 라.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0항)
- 마.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10일간(휴일포함)의 특별휴가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11항)
- 바. 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특례를 신설 (안 제23조의2, 별표5)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9월 16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63,FAX055-880-2159,e-mail:ttakkom@korea.kr)

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14. 8. .
제 출 자 : 행 정 과 장

1. 개정이유

- 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라 연가일수 재직기간 인정범위를 조정하고
- 나. 장기재직자, 임신중인 공무원 및 초등학교 상당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연가일수의 재직기간 인정범위 조정(안 제18조 2항)
 -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산입
- 나.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기간 조정(안 제23조제2항)
 - 둘 이상의 자녀 임신한 경우 90일에서 120일 출산휴가
- 다. 임신 중인 공무원 및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7항,제8항,제9항)
 -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시 당일 1일 휴가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 모성보호시간 사용

하 동 군 공 보

(10) 제 408 호

- 라.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0항)
- 마.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10일간(휴일포함)의 특별휴가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11항)
- 바. 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특례를 신설 (안 제23조의2, 별표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다른 시·군 입법 선례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14. 8. 7)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14. 5.28)
- 김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14. 5. 9)
-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14. 5.16)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14. 5. 9)
-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14. 5. 1)

마.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2014. 8. 25 ~ 9.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9월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를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
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
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제23조에 제7항에서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까지

⑧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⑩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단, 자녀학교의 초청장,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군수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 및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각각 10일간(휴일포함)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단,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을 금지한다.
2. 부서장은 장기재직휴가 허가시는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휴가 사실 기록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행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 제23조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기준(제23조의2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left[\begin{array}{l} \text{「하동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 \text{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 \text{연가일수} \end{array} \right] \times \frac{\begin{array}{l} \text{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 \text{한시 임시제공무원의 주당} \\ \text{근무시간} \end{array}}{\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하여 공제한다.

다.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3. 병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 · 구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안)
<p>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에 따 른 재 직 기 간 을 말 하 되, 휴 직 기 간(법 령 에 따 른 의 무 수 행 이 나 공 무 상 질 병 또 는 부 상 으 로 인 하 여 휴 직 한 경 우 는 제 외 한 다). <u>정 직 기 간 및 직 위 해 제 기 간 은 제 외 한 다.</u></p> <p>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게는 <u>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u></p>	<p>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한다). <u>정 직 기 간, 직 위 해 제 기 간 및 강 등 처 분 에 따 라 직 무 에 종 사 하 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u></p> <p>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u>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 경우에는 120일) 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u>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 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 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p>

현 행	개 정(안)
<p>③ ~ ⑥ (생략) <u><신 설 ></u></p>	<p>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p> <p>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 (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 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p>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p>

하 동 군 공 보

(18) 제 408 호

현 행	개 정(안)
<p><신 설 ></p>	<p>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⑩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녀학교의 초청장,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⑪ 군수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 및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각각 10일간(휴일포함)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단,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을 금지한다. 2. 부서장은 장기재직휴가 허가시는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휴가 사실 기록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행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p>제23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 제23조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p>

현 행	개 정(안)				
<p><신설></p>	<p>[별표 5] <u>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제23조의2 관련)</u> 1. <u>휴가일수 계산 등</u> 가. <u>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u> 나. <u>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u> 다만, <u>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u> 다. <u>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기는 결근으로 본다.</u> 2. <u>연가</u> 가. <u>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면,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u></p>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 지방 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x</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 임시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x 8</td> </tr> </table> <p>나. <u>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하여 공제한다.</u> 다. <u>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u></p>	「하동군 지방 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x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 임시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x 8
「하동군 지방 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x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 임시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x 8		

하 동 군 공 보

(20) 제 408 호

현 행	개 정(안)
	<p>3. 병가</p> <p>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p> <p>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p> <p>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p> <p>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p> <p>4. 특별휴가</p> <p>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p>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5418호, 2014.6.30., 일부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기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기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의5(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제7조, 제7조의3제6항 및 제7조의4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3.12.30.>

[본조신설 2013.12.11.]

[제목개정 2013.12.30.]

하 동 군 공 보

(22) 제 408 호

【현행조례 첨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2013.04.10 조례 제2001호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13.조1686, 개정 2011.4.5.조1937>

제2조(복무선서) ① 하동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3.조1686, 개정 2011.4.5.조193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4.5.조1937>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아니 된다. <신설 2004.8.13.조1686, 개정 2011.4.5.조1937>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1.4.5.조1937>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자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조185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조1852>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2.1.조1409>

③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겸임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4.5.조1937>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4.5.조193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9.3.조1356>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조1937>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1.4.5.조1937>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1.4.5.조1937>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1.4.5.조1937>

제16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1.4.5.조1937>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삭제 2006.1.10.조1738>

제3장 휴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2.1.조1409, 개정 1997.4.2.조1444, 개정 2004.8.13.조1686>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하 동 군 공 보

(24) 제 408 호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1.4.5.조1937, 개정 2013.4.10.조2001>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1.4.5.조1937>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개정 2011.4.5.조1937>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신설 2011.4.5.조193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1.4.5.조1937>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5.조193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6.2.1.조1409, 개정 2011.4.5.조1937>

⑥ 군수는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6.1.10.조1738, 후단 신설 2011.4.5.조1937>

제20조(연가일수예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7.3.조1620, 개정 2011.4.5.조1937>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02.7.3.조1620, 개정 2011.4.5.조1937>

12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 <개정 2011.4.5.조1937>

○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 연도 연가일수 <개정 2011.4.5.조1937>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1.4.5.조1937>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5.조1937>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4.5.조193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조1937>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11.4.5.조1937>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개정 2011.4.5.조1937>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4.9.3.조1356>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신설 1996.2.1.조1409, 개정 2000.2.17.조1555, 개정 2002.7.3.조1620, 개정 2011.4.5.조1937>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6.2.1.조1409, 개정 2011.4.5.조1937>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1.4.5.조1937>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11.4.5.조1937>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신설 2011.4.5.조1937>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6.1.10.조1738, 2008.7.4.조1832, 개정 2011.4.5.조1937>

-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게는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7.조1555, 2001.12.6.조1604, 2008.7.4.조1832, 개정 2011.4.5.조1937>
-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6.1.10.조1738>
-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2.17.조1555>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1.4.5.조1937>
-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1.4.5.조1937>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의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검직

제26조(검직허가) <삭제 2011.4.5.조1937>

제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삭제 2011.4.5.조1937>

제5장 정치운동

제27조(정치적 행위) <삭제 2011.4.5.조1937>

제27조의2(공무원의 범위) <삭제 2011.4.5.조1937>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6) 제 408 호

부 칙 <개정 1985.10.28.조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1.6.조9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10.8.조1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2.1.조1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10.11.조1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3.6.10.조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9.3.조13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2.1.조1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4.2.조1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2.17.조15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6.조1604>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2.7. 3.조1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8.13.조16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1.19.조16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8.19.조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10 조1738>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8.7.4.조18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12.조1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4.5.조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 제 2014 -559 호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2. 개정이유

- 가.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하동군지역정보화 조례에서는 “지역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매년 수립되는 지역정보화시행계획을 심의하여 오고 있음
- 나. 2013년 3월,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관련된 조항과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심의 조항이 삭제됨
- 다. 현재의 지역정보화위원회를 비 상설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4조(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과 제4항 삭제

나.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회의 및 의결) 삭제
다.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를 제6조(자문위원회)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72
FAX 880-2159, e-mail rose69@korea.kr)에게 그 의견을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하동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노령자 등을”을 “노령자, 다문화가정 등을”로 한다.

제4조 중 제2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제5

조 제3항 중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6조 조 제목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하고,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군수는 주요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10명 내
외로 비 상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 구성시 별도계
획을 수립·시행한다.

제7조와 제8조,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중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을 “수당과 여비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1 ~ 3 (생략)</p> <p>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p> <p>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상남도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하동군 지역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③ (생략)</p> <p>④ 군수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노</u> 령자, 다문화가정 등을 -----.</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p> <p>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군수는 지역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p> <p>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p>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 업무관련 부서장
3. 지역정보화 관계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정보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직위는 그 직위 변동과 동시에 직위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장이 된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군수는 주요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10명 내외로 비상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 구성시 별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 ⑦ 삭제

하 동 군 공 보

(34) 제 408 호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1. ~ 3. 삭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 ③ 삭제

제10조(수당) -----

----- 수당과 여비를
-----.

공고 제 2014 - 560호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일

하 동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소통의 대세인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동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
용자 참여행사 운영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하동군 홈페이지와 SNS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
과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준칙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삭제(안 제14조)
- 나. 홈페이지 및 SNS 이용자의 참여행사 운영 신설(안 제14조)
- 다. 외국어 홈페이지 담당부서 지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72
FAX 880-2159, e-mail rose69@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하동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 동 군 공 보

(38) 제 408 호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를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을 ““인터넷시스템”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홈페이지”란 인터넷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모바일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도 포함한다.

같은 조 제4호 중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을 ““인터넷 민원”이란”으로 하고, “홈페이지를”을 “하동군 홈페이지를”로, 같은 조 제5호 중 ““개인정보”라 함은”을 ““개인정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비밀번호”라 함은”을 ““비밀번호”란”으로 하며, 7호, 8호,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모바일 홈페이지”란 통상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접속했을 때 모바일 환경에 맞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8. “모바일 앱”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OS)에 최적화 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9.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온라인 상으로 사람들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제2항 제6호 중 “국내·외”를 “국내·국외”로 한다.

제4조의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를 “이용자들의”로 한다.

제5조에 제3항,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에서 입력이 불가능하면 게재자료를 작성하여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 조정할 수 있다.
- ⑤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자료 입력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이나 추가입력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1항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6조 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1항의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 답변에 응해야 한다”를 “군정에 대한건의, 제도개선, 불편사항의 의견,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비실명 의견은 제외할 수 있다.

제5장의 제14조를 제4장의 제14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용자 참여 행사) ① 군수는 홈페이지 및 SNS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계획 및 성과 등을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행사, 하동관광, 특산물 등을 홍보·기념하려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자우편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제3항 중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를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각종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p> <p>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p> <p>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p> <p>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p> <p>5.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 뜻은 -----.</p> <p>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 ----- -----.</p> <p>2. “인터넷시스템”이란 ----- ----- ----- .</p> <p>3. “홈페이지”란 인터넷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도 포함한다.</p> <p>4. “인터넷 민원”이란 ----- ----- ----- 하동군 ----- 홈페이지를 ----- -----.</p> <p>5. “개인정보”란 ----- ----- -----.</p>

6. “비밀번호”라 함은 컴퓨터이용자의
이용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생
략)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 5. (생 략)

6. 국내·외에 군의 홍보

7. (생략)

6. “비밀번호”란

-----.

7. “모바일 홈페이지”란 통상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기로 접속했을 때
모바일 환경에 맞게 디스플레이 해
주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8. “모바일 앱”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
일

기기 운영체제(OS)에 최적화 되어 단
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
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9.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온
라인 상으로 사람들간의 인적 네트
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
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현
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국내·국외에 -----

7. (현행과 같음)

하 동 군 공 보

(42) 제 408 호

③ ~ ④ (생략)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 ②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 -----

----- 이용자의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에서 입력이 불가능하면 게재 자료를 작성하여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자료 입력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이나 추가입력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 ② (생략)

③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게시된 자료가 해당 게시판의 개설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 글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 이동하였을 경우는 이동된 게시판명과 함께 이동되었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민원 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생략)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답변에 응해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① -----

----- 전자민원창구를 -----

-----.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군정에 대한 건의, 제도개선, 불편사항의 의견,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비실명 의견은 제외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44) 제 408 호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장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삭제

제4장 제14조(이용자 참여 행사) ① 군수는 홈페이지 및 SNS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계획 및 성과 등을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행사, 하동관광, 특산물 등을 홍보·기념하려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 군수는 지역 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 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자우편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우편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 홈페이지는 국제협력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

